

2. 주요내용

가.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겸업금지 업종 열거(제29조의2 신설)

- 1)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종류는 휴게음식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, 단란주점영업, 유흥주점영업, 위탁급식영업, 제과점영업으로 구분
- 2) 동 세부업종 중 단란주점영업, 유흥주점영업 및 휴게음식점영업 중 특정 업태(속칭 ‘티켓다방’)의 경우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의 발생이 우려
- 3) 이에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, 유흥주점영업 및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·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·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에 대하여만 겸업을 금지하려는 것임

3. 의견제출

이 개정령(안)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. 7. 2.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(참조: 고용서비스정책과,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, 전화 044-202-7331, 7336, FAX 044-202-8037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기타

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「법령마당」 ⇒ 「입법·행정예고」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18-654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5월 23일

국토교통부장관

신기술 지정 신청

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 (주)이왕코리아(이창욱) ② 이케이리플래시건설(주),(이창식) ③ (주)다누리건설(조민국)

나. 전화번호 : ① 051-867-9777 ② 051-501-8555 ③ 055-752-9163

2. 명칭 : 장기 내구성능과 내진 성능을 확보한 관로 보수·보강 공법(HI-PER TUBE System)

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/ 상·하수도 /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

<기술의 요지>

본 신청기술은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튜브를 활용하여 관로의 보수·보강은 물론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원형, 사각형 등 관로의 다양한 형태 및 환경의 변화에도 적용이 가능하며, 시공 두께를 줄여 통수량을 증대시키고, 함침된 튜브는 상온에서 6개월 보관 가능하다. 또한, 경화장치에 센서 및 카메라를 장착하여 팽창 상태, 내부 온도 및 경화 속도 등을 제어하며 시공 전 과정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비굴착 관로 갱생 공법이다.

<범위>

균열 방지와 두께를 조절하는 다방향성의 내층, 강도와 강성을 높이는 직조된 중간층, 인장력을 높이고 뒤틀림을 방지하는 격자 형태의 외층으로 구성된 3개의 유리섬유 층과, 고밀도 폴리에틸렌, 격자형태의 PVC 및 유리섬유 융착 시트로 구성된 합침 튜브를 사용하여 광 경화 방식을 적용하는 비 굴착 갱생 공법으로 적용 대상은 원형 관로 D300mm~1,750mm, 사각 관로 300mm×300mm~1,350mm×1,350mm 이다.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481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●산림청공고제2018-166호

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예정 공고합니다.

2018년 5월 23일

산 립 청 장

1. 공고명 :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예정 공고
2. 지정목적 :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·경관적·정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유·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보호·관리
3. 지정예정 내용
 - 가. 대상

종 류	명 칭	소재지	수량	토지 소유자
유형	죽녹원	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19	196,192㎡	담양군청
유형	복상 갈계숲	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361-1번지외 1	1개소	은진임씨 대종회
유형	이산표석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산1-144	1식	국(산림청)
유형	유명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	경기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58-1	2개소	국(산림청)
유형	산음자연휴양림 숲해설 코스	경기 양평군 단월면 고북길 347	1식	국(산림청)
유형	대관령자연휴양림 숲속수련장	강원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-1	5동	국(산림청)
유형	대관령자연휴양림 전통숯가마	강원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-1	1동	국(산림청)
유형	대관령자연휴양림 동휴당	강원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-1	1동	국(산림청)
유형	청옥산자연휴양림 무림당(撫林堂)	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-64	1동	국(산림청)